교육혁신단 규정

2016. 2. 26. 제정
2016. 9. 23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혁신단(이하 "교육혁신단"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교육혁신단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대학 교육 혁신과 관련된 연구와 국내외 기관 협력에 기여
2. 효과적 교수학습법 지원 및 연구와 교육환경 개선 사업
3. 교내 온라인 교육 환경 구축과 운영
4. 국내외 MOOC 콘텐츠 개발과 운영
5.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 수행
6.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수행 <신설 2016.6.16.>
7. 기타 교육혁신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<개정 2016.6.16.>

제3조(단장) ① 교육혁신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본교 정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단장은 총장의 결정에 따라 부총장이 겸직할 수 있다.

② 단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혁신단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조직) ① 교육혁신단에 교육혁신센터, MOOC센터, THE인재양성총괄본부, 엘텍융합교육혁신본부를 둔다. <개정 2016.6.16.>

② 교육혁신센터에 강의실지원센터를 둔다.

③ THE인재양성총괄본부에 THE인재교육실 및 THE인재평가지원실을 둔다.

④ 엘텍융합교육혁신본부에 PRIME사업관리지원실을 둔다. <신설 2016.6.16.>

제5조(센터장 등) ① 센터에 센터장을, 본부에 본부장을 두며,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 및 본부에 실장, 분과장, 팀장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원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업무분장) ① 교육혁신센터는 대학 교육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및 기획, 교수법 및 학습법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연구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② 교육혁신센터의 강의실지원센터는 강의실 기자재 및 비품을 관리하고, 원활한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MOOC센터는 사이버캠퍼스 등 교내 온라인교육 시스템 운영과 MOOC 강좌 운영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THE인재교육실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교양교육 분과, 전공교육 분과, 비교과

교육 분과에 관한 업무 및 예산 집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⑤ THE인재평가지원실은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교육지원시스템 분과, 성과관리 분과 운영에 관한 업무 및 성과지표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⑥ PRIME사업관리지원실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. <신설 2016.6.16.>

제7조(교육혁신위원회) ① 대학의 교육 혁신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및 교육역량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호크마교양대학장, 교무처장, 경력개발센터장, 교무처부처장, 기획처부처장(평가), 법학전문대학원, 인문과학대학, 사회과학대학, 자연과학대학, 공과대학, 조형예술대학, 사범대학, 경영대학 소속 교원 각 1명, 교육과정위원회 위원 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(교수학습개발위원회) ① 교수·학습 역량개발과 강의환경 개선, 온라인 강의 운영 및 개발을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정보통신처장, 교육혁신센터장, MOOC센터장으로 하고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은 2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.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품질관리위원회) ① 교내 온라인 강의 및 MOOC 콘텐츠 설계와 개발, 운영상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교무처장과 본교 학생, 학부모 중 단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(저작권위원회) ① 교내 온라인 강의, MOOC 및 공개 콘텐츠 배포상의 저작권 준수 및 침해 예방을 위하여 저작권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정보통신처장, 교무처부처장, 기획처부처장, MOOC센터장과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 등 관련 법률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기획처장으로 한다.

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제11조(ACE사업추진위원회) ①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ACE사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단장, 호크마교양대학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재무처장,

국제교류처장, 정보통신처장, 교육혁신센터장, MOOC센터장, THE인재양성총괄본부장 및 교무위원급 중에서 총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교육혁신단장으로 한다.

③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내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,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THE인재양성총괄본부장으로 한다.

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사업기간으로 한다.

제12조(PRIME사업추진위원회) ①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PRIME사업추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총장, 단장, 공과대학장, 호크마교양대학장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학생처장, 입학처장, 재무처장, 국제교류처장, 산학협력단장, 경력개발센터원장, 교육혁신센터장, 엘텍융합교육혁신본부장, 목동병원장 및 총장이 지명하는 교내외의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. <개정 2016.9.23.>

③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교내외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장은 추가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PRIME사업관리지원실장으로 한다.

⑤ 삭제 <2016.9.23.>

[본조신설 2016.6.16.]

제13조(사업계획 및 예산서) 교육혁신단은 각 센터의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6.6.16.>

제14조(사업보고 및 결산서) 교육혁신단은 사업연도의 사업보고, 결산서를 작성하여 단장의 결재를 받아 다음 사업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6.16.>

제15조 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교육혁신단의 경비는 본교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<개정 2016.6.16.>

② 교육혁신단의 현금출납사무는 재무처 회계팀에서 관리한다. <개정 2016.6.16.>

제16조(운영세칙) 교육혁신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6.16.>

부칙 <2016. 2. 26. 제정>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교육혁신단 규정

부칙 <2016. 6. 16. 개정>

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9. 23. 개정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